

세법학 1부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국방부의 군사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중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함)의 공급을 도급받은 후 2016년 7월 1일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와 쟁점장비를 2016년 7월 31일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2016년 8월 10일 B회사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19년 2월경 A회사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장비의 공급에 관하여 별다른 세금 탈루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하였다. 그 이후 2020년 7월경 과세관청의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회사의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쟁점장비의 공급은 B회사의 복수의 협력사들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며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B회사는 쟁점장비의 공급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수정신고까지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1년 5월경 A회사에 대하여 다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2017년 4월경에도 쟁점장비의 공급과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조사의 범위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위 확대'라 함).

물음 1) 국세기본법령상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사례>에서 이 사건 재조사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4점)

물음 3)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4점)

물음 4)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이 사건 범위 확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A회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단, <사례>에서 A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에 정한 '중소규모납세자'에 해당함). (4점)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거주자인 甲은 2010년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A가든'이라는 상호로 고급음식점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다. 甲은 2021년 5월 31일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甲이 제출한 서류에는 월별 수입금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일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없다. 또한 20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은 15억 원인데 반해 甲이 제출한 서류상의 수입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 한편 甲이 신고한 장부상의 원·부재료비 지출액은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지출액의 50%에 불과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甲의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15억 원)과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6억 원)을 기초로 비용관계 비율(2.5)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산출하는 한편, 원시장부상의 실제 원·부재료 지출액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과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4점)

물음 2)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경정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사례>가 적법한 추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8점)

물음 3)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경정 방법 중 하나인 기준경비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4) 「소득세법 시행령」상 추계 결정·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였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도 추계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甲이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10점)

【문제 3】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A회사는 분양사업을 위하여 X건물의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실행수수료,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 보수 및 금융자문·주선업무수수료 등(이하 “쟁점수수료”라 함)을 손금산입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쟁점수수료를 X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A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사례 2>

2019년 10월 1일 내국상장법인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와 내국법인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함)간에 C회사가 보유한 Y상표권을 B회사가 국내에 한정하여 영구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쟁점상표사용권'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B회사의 쟁점상표사용권과 관련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상표사용권은 라이선스 계약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 문단 10의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된다'고 회신 받았으나, B회사는 쟁점상표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장부상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2020년 10월 중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회사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C회사로부터 무형자산(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사용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20년 12월 5일에 B회사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사례 3>

내국법인 D주식회사(이하 'D회사'라 함)는 체육시설업, 스포츠용품 대여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 2011년 1월 15일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등록하였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Z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쟁점토지 취득시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토지계정)으로 계상]하여 2017년 8월 15일에 양도하고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D회사는 쟁점토지를 보유당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9년 12월 중 D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2020년 2월 15일 D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단,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5% 미만임)

- 물음 1) <사례 1>에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논하시오. (5점)
- 물음 2) <사례 2>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법인세법」상 쟁점 상표사용권에 대한 2019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 물음 3) <사례 3>에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논하시오. (5점)
- 물음 4) <사례 3>에서 법인세법령상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주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2020년 10월 1일에 거주자 甲(57세)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인 자녀 乙(27세, 회사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X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라 함)을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모든 채무의 인수사실이 입증됨)으로 부담부증여를 하였다. 乙은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증여받은 적이 없다. 또한 거주자 甲은 쟁점주택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는 보유한 주택이 없으며 쟁점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증여일 현재 쟁점주택 관련 사항 -

- 증여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 4억 원
- 임대계약 현황 : 임대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채무 : 2억 원(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액을 말함)

- 물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
- 물음 2) <사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과정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 물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 (4점)